

14.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증개정령

대통령령 제15,961호 1998. 12. 31

개 정 이 유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보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령 제12조제1항).
-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재협의하여야 할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증가하여 오염물질의 추가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재협의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다. 매립·하천공사 및 공항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실시계획의 인허가단계에서 공사시행의 고시 또는 허가단계로 조정함(령 별표 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라목(2) 및 (3)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확정전”을

각각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 1 바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하천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을 “하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을 “농어촌정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전”으로 한다.

별표 1 아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 제9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을 “동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해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자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을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차목(1)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전)

별표 4 제1호중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을 “그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사업외의 사업”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을 “그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사업외의 사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관찰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관찰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